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052호
- 나. 제안자 : 허 훈 의원(찬성자 45명)
- 다. 제안일 : 2023년 8월 14일
- 라.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1조의2를 추가하여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 제8조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써 정함 (안 제11조의2 추가)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외에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호에서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글자크기를 조례로 규정하고 비방, 모욕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제2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한다.</u> <u>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한다.</u> <u>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u>

현 행	개 정 안
	<p><u>로 표출하여야 한다.</u></p> <p><u>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시의원, 자치구청장, 구의원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u></p> <p><u>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u></p>

나. 검토 내용

(1) 관련 법에서의 규정사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목적¹⁾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²⁾는 도시지역, 도로, 공항, 교통수단 등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옥외광고물법」 제4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³⁾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장소·물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조항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예외 규정을 두어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광고물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옥외광고물법」(22.12.11, 시행)은 제8조제8호를 신설하여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광고물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4)의 조례위임사항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특례조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어긋남
- 또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번 일부조례개정안은 인천시의 사례⁵⁾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 다. (생략)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 카. (생략)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5)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각 정당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공포(2023.6.8.)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정 조례를 “현행법상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자치단체에 위임한 조항이 없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했고, 인천시의회도 “규제 없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헌법상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절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절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정당의 명칭
 - 나. 정당의 연락처
 -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2) 개정 조항 검토

“정당현수막의 동시 게시 개수(안 제11조의2 제1항제1호)”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한다.**

- 「옥외광고물법」 개정('22.12.11.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⁶⁾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8건의 「옥외광고물법」 개정발의안은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공통적으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개정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23.6.8. 시행)⁷⁾ 제12조의2제2호⁸⁾에 따라 “동시에 게시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였음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현황 〉

구분	발의일	현행대비 추가 규율 사항	
최영희의원안	2023.3.13.	대통령령에 개수 제한 추가	소관위 상정 (2023.5.16.)
김성원의원안	2023.3.13.	대통령령에 개수 ·규격 제한 추가	
송석준의원안	2023.3.17.	대통령령에 개수 ·이격거리 제한 추가	
박병석의원안	2023.3.28.	표시 방법·기간, 장소·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김미애의원안	2023.4.14.	현수막을 설치할 때 미리 시장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통지 방법, 설치 금지 장소, 개수 , 규격, 간격추가	미상정
이만희의원안	2023.4.18.	대통령령에 개수 ·규격·설치장소 추가, 위반 광고물 조치, 행정대집행 근거 규정에 법 제8조의 적용배제 광고물 추가	미상정
민형배의원안	2023.8.17.	대통령령에 개수 ·규격, 장소, 표시방법 및 기간 당 표시·설치 제한 추가, 정당 무소속 현수막도 예외대상 추가	미상정
박성민의원안	2023.8.17.	지정구역으로 장소를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미상정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2023.6.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추가정리

- 7)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각 정당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공포(2023.6.8.)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정 조례를 “현행법상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자치단체에 위임한 조항이 없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했고, 인천시의회도 “규제 없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헌법상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
- 8)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1호9)에 명시된 ‘국회의원지역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총 49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적게는 6개 동에서 많게는 13개 동을 포함하고 있는 바(붙임1 참고), 정당현수막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게시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정당법」 제37조제3항10)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의 중앙당, 시당, 당원협의회에서 각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현수막 개수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 판단됨

<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내용(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

개정 이전	개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과 같이 신고를 거쳐(제3조)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제4조) ※ 교통신호기, 가로등, 가로수 등에는 설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다만,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령」 정당 현수막에 ①정당 명칭,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하여 ②15일 이내로만 설치

9)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10)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당현수막의 게시장소(안 제11조의2 제1항제2호)”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한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¹¹⁾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고, 자치구의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는 ‘현수막은 벽면, 지정게시대, 지주,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2조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의 정당현수막 설치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우려를 잠재우고 관련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신청이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반현수막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명시한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23.5월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당현수막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밝혔음
- 현재 세종시, 청주시, 과천시, 이천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고 있으며,
-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23.6.8.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을 철거 중인 인천시는 정당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확대¹²⁾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를 규제함과 동시에 정당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12) 인천 미추홀구,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15개소 신설, 글로벌경제신문, 2023.9.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 시대는 구청장이 설치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 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지정게 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 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 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 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정당현수막의 글자크기(안 제11조의2 제1항제3호)”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을 표기하는 글자 크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현수막 표시방법(정당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하고,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일반적인 현수막의 경우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퍼센트 내외가 되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현수막 표시방법 위반 시 불법광고물로 간주하여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행정청에서는 이를 단속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퍼센트 내외’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정당현수막의 글자 크기를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일관된 규격으로 명시하여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 관리·감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기간

- (방법)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작성하여 게시
 -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
 - ※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일반적인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연락처 등을 작성한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내외가 되도록 작성 권고
 -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
 - 정당 연락처는 설치하고자 하는 정당 사무소의 연락처를 작성
 - ※ 중앙당에서 설치시 중앙당 사무소, 시도당에서 설치시 시도당 사무소 연락처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현수막 내용·설치 등 관련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작성

“정당현수막의 비방 및 모욕 금지(안 제11조의2 제1항제4호)”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시의원, 자치구청장, 구의원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22.12.11.) 이후 특정인, 특히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¹³⁾이 가중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형법」에 명시된 ‘명예훼손(제307조, 제309조)¹⁴⁾’과 ‘모욕(제311

13) 「현수막 무법천지’ 현실로... 전국 거리에 막말·비방 난무」, (연합뉴스, 2023.8.1.)

「도로 곳곳 뒤덮은 정당현수막에 ‘막말’ 판쳐」, (동아일보, 2023.3.14.)

14)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15)’에 해당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은 범죄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현수막 설치는 「정당법」 제37조16)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일환이나, 특정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22.12.11. 시행)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정당현수막의 비방·모욕 금지 대상을 서울특별시, 시의원, 자치구청장, 구의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자칫 그 외의 특정인은 비방·모욕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바, 보다 포괄적으로 대상을 규정하여 정당현수막의 순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정당현수막의 관리(안 제11조의2 제2항)”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생략)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23.5.8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 기간(15일)이 지난 정당현수막을

15)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철거한 후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정당현수막 철거를 예고한 후 해당 정당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고발당하는 등¹⁷⁾ 처분행정청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으로는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법제도상 관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 이번 일부조례개정안에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처분행정청이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불법 현수막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작성하여 게시 ※ 정당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되 정당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 인정X ※ 천을 덧대거나 수기로 표시기간 임의 연장한 경우 인정X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 교통 신호기·도로 표지 가림 금지 -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장소에는 2m 이상 설치 - 가로등별 현수막 2개 이하 설치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방법 및 설치방법 위반 시, 정당에 시정요구, 미이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처분 -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지정게시대 설치 권고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2023.6.12.) 추가정리

17) 「인천, 불법 정당 현수막 전격 철거... 다른 지자체는 뒷짐」(동아일보, 2023.7.13.)

다. 종합 의견

-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설치 개수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이나, 정당현수막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게시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에 포함하지 않고, 자치구의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정당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나, 제정게시대를 활용하는 일반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는 정당현수막의 글자 크기를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일관된 규격으로 명시하여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 관리·감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는 정당현수막에 서울특별시장, 시의원, 자치구청장, 구의원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모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정당 홍보문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다만, 정당현수막의 순기능 제고를 위해 비방·모욕 금지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제2항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처분행정청이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불법현수막 관리·감독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옥외광고물법」 개정(22.12.11.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정당현수막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하겠음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11조의2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모든 조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목제1동, 목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향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붙임 2

인천시 조례와 서울시 일부개정조례안과의 대비표

인천시 조례	서울시 일부개정조례안
<p>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p>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한다.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한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시의원, 자치구청장, 구의원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p>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p>

문서 번호

2023081400000052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제1항제7호와 제11조의2(집회현수막)를 신설하여 현수막의 표시 설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